

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3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. <u>다만,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,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,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체납 관련 예외사유 인정 범위 확대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월별납부승인과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<u>신용담보업체</u>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(사업장 또는 법인단위)를 <u>신용담보한도액</u>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-----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<u>일괄납부업체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일괄납부한도액</u> -----</p> <p>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1조(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신설)</p>	<p>제11조(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. 이 경</u></p>	<p>○ 월별납부한도액 관리 방식 조정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④ (신 설)</p>	<p><u>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<u>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 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</u></p>	
<p>제16조(경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(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15일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별지제11호서식의 <u>납</u></p>	<p>제16조(경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납</u></p>	<p>○ 용어의 현행화</p>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
<p>[별지 6] 납세고지(통보)서</p> <p>(별지 제6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08 427 394 542"> <tr><td>담당부서</td><td>○○세관○○과</td></tr> <tr><td>담당과장</td><td>○○○</td></tr> <tr><td>담당자</td><td>○○○</td></tr> <tr><td>연락처(전화)</td><td>○○○-○○○○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세고지(통보)서</p> <p>1. 귀하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납세고지</u>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아 래</p> <p>가. 납부서번호 : 나. 세액합계 : 납기내 금액 원정 납기후 금액 원정 다. 납부기한 : 20 . . . 까지 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마. 회계연도 : 20 년도 바. 회계구분 :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사. 납세의무자 : 주소 상호 성명 아. 수입신고번호 : 외 건</p> <p>2.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(납기후 금액)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(최대 5년) 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납부 목록(별지 제12호 서식)과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첨부 : 납부 목록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</p>	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담당과장	○○○	담당자	○○○	연락처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<p>[별지 6] 납부고지(통보)서</p> <p>(별지 제6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07 427 1093 542"> <tr><td>담당부서</td><td>○○세관○○과</td></tr> <tr><td>담당과장</td><td>○○○</td></tr> <tr><td>담당자</td><td>○○○</td></tr> <tr><td>연락처(전화)</td><td>○○○-○○○○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부고지(통보)서</p> <p>1. 귀하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아 래</p> <p>가. 납부서번호 : 나. 세액합계 : 납기내 금액 원정 납기후 금액 원정 다. 납부기한 : 20 . . . 까지 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마. 회계연도 : 20 년도 바. 회계구분 :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사. 납세의무자 : 주소 상호 성명 아. 수입신고번호 : 외 건</p> <p>2.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(납기후 금액)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(최대 5년) 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납부 목록(별지 제12호 서식)과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첨부 : 납부 목록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</p>	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담당과장	○○○	담당자	○○○	연락처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<p>○ 용어의 현행화</p>
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																
담당과장	○○○																	
담당자	○○○																	
연락처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																
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																
담당과장	○○○																	
담당자	○○○																	
연락처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																

